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94
----------	-------

발의연월일 : 2026. 4. 3.

발 의 자 : 김영진·허영·김윤
차지호·안태준·소병훈
서삼석·이정현·염태영
김성희·권철승·진성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기·학대·안전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후 처벌 중심의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반려동물 취득 단계에서부터 보호자의 책임성과 동물의 습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동물 등록 및 영업자 관리 체계에 치중되어 있어, 실제 양육 주체인 보호자의 사전 준비 상태나 책임 의식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미 주요 국가들은 보호자의 책임 인식과 준비 정도를 사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일부 지역의 보호자 역량 검증,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교육 및 시험 제도, 프랑스의 입양 전 책임 확인 및 숙려기간 제도 등 보호자의 실질적인 책임 인식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사전에 사육·관리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판매·분양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유기 및 학대를 예방하고 성숙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등록대상동물 사육 등에 관한 교육) ①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는 사전에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및 보호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이하 “사육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육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최근 5년 이내 사육교육을 이수한 자
2.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사육 경력 및 숙련도가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하여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육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육교육을 이수하

지 아니한 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분양 또는 기증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동물생산업자·동물수입업자 또는 동물판매업자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법인·단체

④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육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할 수 있다.

1. 유기동물의 임시보호 또는 긴급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그 밖에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육교육의 실시·위탁 및 이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5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사육교육 이수에 대한 정보

제101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육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분양 또는 기증한 자
- 1의2.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요청에 대하여 거짓 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동물 사육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6조의2(등록대상동물 사육 등</u> <u>에 관한 교육) ① 등록대상동</u> <u>물을 취득하려는 자는 사전에</u> <u>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u> <u>및 보호에 관하여 국가 또는</u> <u>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u> <u>(이하 “사육교육”이라 한다)을</u> <u>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자에게는 사육교육의 전부 또</u> <u>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최근 5년 이내 사육교육을</u> <u>이수한 자</u> <u>2. 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u> <u>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u> <u>하는 전문 자격을 갖춘 자</u> <u>3. 그 밖에 사육 경력 및 숙련</u> <u>도가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u> <u>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u> <u>하는 자</u> <p><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u> <u>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농림축</u> <u>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u></p>

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하여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육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육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분양 또는 기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생산업자·동물수입업자 또는 동물판매업자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법인·단체

④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육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95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동물보호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1. (생 략)

경우에는 사육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할 수 있다.

1. 유기동물의 임시보호 또는 긴급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그 밖에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육교육의 실시·위탁 및 이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5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① -----

-----.

1. 제16조의2에 따른 사육교육 이수에 대한 정보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